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4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 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관 계약의 해지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일

제10조 기준통화

제11조 적용환율

제12조 환산기준일의 적용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15조 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①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기본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하며, 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이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미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특약을 통해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하며, 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도 보험금 등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주계약은 이 특약이 부가되는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주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환산기준 관련 용어

(1)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송금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로서 회사가 보험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고시환율 예시(단위:원)

주거래 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 기준율	현찰		송금(전신환)		지급 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 매도)	받을 때 (전신환 매입)	
미국 USD	1,150.50	1,170.63	1,130.37	1,161.70	1,139.30	1,139.30 ~ 1,150.50

해당 일에 적용되는 지급기준환율을 알아보시다. 회사는 해당 일에 최초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 매입율)의 범위에서 지급기준 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일의 매매기준율은 1,150.50원이며 전신환매입율은 1,139.30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39.30원과 1,150.50 원 범위에서 지급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신환매입율(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

외국 혹은 외부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 온 타발 송금환을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 송금환율(받을 때)로 표기됩니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3) 환산기준일

계약의 보험금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되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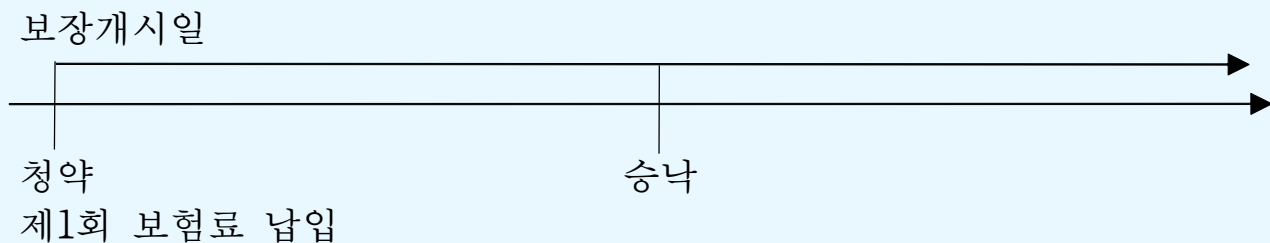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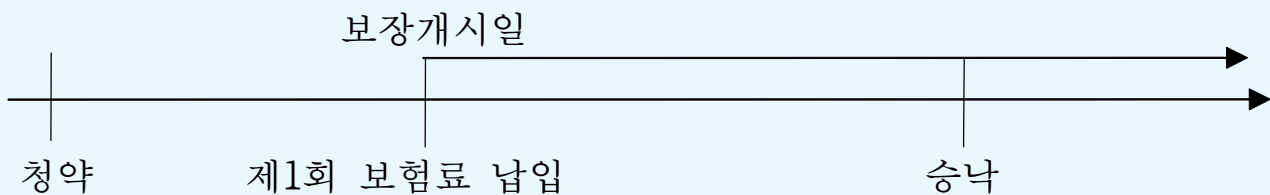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 특약을 주계약의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 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관 계약의 해지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가 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특약도 동시에 해지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5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일

제10조 기준통화

① 주계약의 기준통화는 “미화”로서 보험금 등의 지급이 “미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이 특약을 통해 보험금 등을 “원화”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적용환율

① 보험금 등의 지급은 접수 시점에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 또는 “미화”로 지급 되며 “원화”로 지급을 원할 경우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이 “원화”이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12조 환산기준일의 적용

① 지급형태에 따른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지급형태는 모두 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특약명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원화환산 지급서비스특약	기납입보험료 반환 (품질보증해지, 계약취소 등)	지급당일
	중도인출	접수일+제2영업일
	해약환급금	접수일+제2영업일
	감액	접수일+제2영업일
	보험금	접수일+제2영업일
	쿠폰지급금, 연금	지급당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접수일*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자동이체일-제1영업일

- 주) 1.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환산기준일인 “접수일” 이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접수일을 말합니다.
 2. 본 조에서 당일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기납입보험료 반환, 쿠폰지급금, 연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등)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라면 직전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예시]

1월 2일(영업일), 1월 3일(영업일),
 1월 4일(공휴일), 1월 5일(영업일), 1월 6일(영업일)

1. 해약환급금 \$1,000을 1월 2일에 접수할 경우,
 (1월 5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50로 가정)
 ⇒ 해약환급금 접수일인 1월 2일로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3일은 영업일이
 나,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환산기준일은 접수일 + 제2영업일인 1월 5
 일이 됩니다.

따라서 $\$1,000 \times \text{₩}1,150 = \text{₩}1,150,000$ 이 해약환급금이 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100,000 을 1월 3일에 접수할 경우,
 (1월 6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40로 가정)
 ⇒ 사망보험금 접수일인 1월 3일로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4일이 공휴일이
 므로, 환산기준일은 접수일 + 제2영업일인 1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00,000 \times \text{₩}1,140 = \text{₩}114,000,000$ 이 사망보험금이 됩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 ① 회사가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에 대해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보험금 등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원화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 ①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환산지급서비스는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